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함) 개정(2023. 3. 28.)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규정(안 제26조의2 신설)

나. 시장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중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규정(안 제15조제3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00. ~ 6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)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5조(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)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u> <u>제26조의2(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)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.</u>
<u><신설></u>	

<의안 소관 부서명>
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	
연락처	(044) 204 - 7900